

[별지 제5호의 서식]

자동차 인증부품 성능·품질인증 서약서

업 체 명		대 표 자	
주 소		전화번호	

본 업체는 인증부품 품질인증신청을 함에 있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성실히 따르며,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인증부품 품질인증(이하 “인증”)기관의 인증부품 품질인증 업무절차를 준수한다.
2. 소비자의 불만사항의 처리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한다.
(인증부품의 A/S기간은 OEM의 A/S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.)
3. 부품심사에 따른 부품의 분해, 파손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4. 인증기관의 직원이 심사를 위한 방문 시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.
5. 인증기관의 신청 보완 요구 시 보완 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한다.
6. 인증서 발급 후 인증부품의 품질,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 시 즉시 인증기관에 통보한다.
7. 인증이 허가된 인증범위의 측면에서만 인증에 대한 주장을 한다.
8. 인증기관의 평판을 실추 시키는 방법으로 인증표시를 사용하지 않으며 인증취소 사유에 의한 인증기관의 요구 시 인증서를 반납한다.
9. 문서, 소책자 및 광고물 등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경우 「인증표시 사용자 매뉴얼」을 준수한다.
10. 인증기관이 인증심사 시 국토교통부의 관련자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락한다.
11. 고객이 인증부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업체는 「제조물책임법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.

년 월 일

서약인 : (서명)

(사)한국자동차부품협회장 귀하